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396호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임용분야 [근무부서]	직 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내과진료실 의사 [보건행정과] (군포보건소)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임용시 ~ '28. 6.30.	주40시간	◦ 진료실 환자 진료 및 상담 등 ◦ 보건증 등 제증명 판정 ◦ 기타 보건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가.「지방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나.「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주소지 및 성별 :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요건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내과진료실 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3차 재공고부터 인성검사 생략**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우수)”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보통)”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불합격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공 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9.22.(화)	10.13.(화) ~ 10.15.(목)	10.21.(수)	11.26.(목) ~ 11.27.(금)	12. 9.(수) 전·후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개별 확인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6 보수수준

(단위 : 천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 봉 액		주당근무시간
		상한액	하한액 (기준액)	
내과진료실 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69,663**	40시간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20% 내에서 추후 결정**

나.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 별도 지급**

다. 매년 정기평가 시행 후 **성과연봉** 지급 예정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10.13.(화) ~ 10.15.(목) / 3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원서 제출 전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 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 구입은 우체국에서 16:30까지 가능

-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 제2회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고, 우편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8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하되 스테이플러, 클립, 양면인쇄 금지>

가. 응시원서 1부 - (서식1)

○ 응시수수료 : 군포시 수입증지 첨부 [5급: 1만원]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 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A4용지) - (서식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서식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서식4)

마.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서식5)

바.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 (서식6)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7)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서식8)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초본(병역포함) 1부 - (서식9)

차.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상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①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②전일제의 경우 전일제 혹은 주40시간 명시

✔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기관의 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근무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서식10)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인사 담당자 작성, 기관 관인 날인 필수)**하거나 **인사 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불인정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타.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학위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파.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하. 관련분야 수상,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후보자 등록시 원본 확인 후 반납 예정)**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나.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확인 바람.

다. 경력사항의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담당업무와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사.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자. 군포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 불가

차. 「공무원연금법」 개정('18.9.21 시행)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제50조제1항

카.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임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 불가함.

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이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함. 단,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

파.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031-390-0122), 기타 직무관련 사항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과진료실 의사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 031-390-8920